

2020년도 제1회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

2020년도 제1회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
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
니다.

2020년 4월 21일
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장

1 최종합격자 명단

□ 최종합격자

연 번	응시번호	성 명	비 고
1	20-038	김 ○ 건	6월 임용예정
2	20-055	노 ○ 진	7월 임용예정

□ 예비합격자

연 번	응시번호	성 명	비 고
1	20-017	손 ○ 옥	
2	20-043	강 ○ 은	

2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

□ 채용후보자 등록

- 등록대상 : 최종합격자
- 등록기간 : 2020.04.22.(수) ~ 2020.04.28.(화) 18:00까지
- 등록방법 :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으로 서류 제출(방문 제출)*
* 임용승인요청과 관련한 서명 날인 및 확인을 위한 방문 필요

3 제출서류

- 이력서 1부(별지 제1호 서식)
※ 사진(최근 3개월 이내, 모자 벗은 상반신 반명함판 3×4cm) 부착
- 신원진술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2부(별지 제2호 서식),
※ 동일한 원판의 인화된 사진(3×4cm) 각각 부착
※ 사진(모자 벗은 상반신 반명함판) 4장 별도 제출
- 채용신체검사서 1부(별지 제3호 서식)
※ '공무원 채용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'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발급한 공무원 채용
신체검사서 /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검사서
- 신분증 사본 1부
- 주민등록등본 1부, 주민등록초본 1부(병역사항 포함)
-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(상세) 각 2부(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된 것)
-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부
- 병적증명서 2부

4 유의사항

-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신원조회, 결격사유 조회, 채용신체검사
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※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,
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○ 지정된 기한 내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「공무원 임용령」제1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
○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

- 신원진술서의 '학력'란은 초등학교부터 최종학력까지 기재
- 모든 별지 서식의 자필서명은 본인 한글성명을 정자로 기재
- 모든 제출서류는 단면으로 출력하여 제출
- 제출서류는 정리 후 반드시 클립으로 고정하여 제출

※ 양면인쇄, 2쪽 모아찍기 금지, 스테이플러 사용금지

4 기타 문의사항

○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업무분야 관련 문의사항 :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 운영지원팀 (☎ 051-550-8015)
- 임용절차 관련 문의사항 :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 운영지원팀 (☎ 051-550-8010)

붙임 제출서류 서식

[별지 제1호 서식]

사 진 (3 x 4cm)		이 력 서							
		성	한 글	생 년 월 일					
		명	한 자	주 민 등 록 번 호					
		주 소		전 화 번 호		자 택) HP)		E-mail	
학 력	기 간(연,월,일까지 기재)	학 교 명(고교이상)		전 공(학위)					
	~								
	~								
경 력	기 간 (연,월,일까지 기재)	근 무 처		직 위(급)		업 무 내 용			
	~								
	~								
자 격 및 면 허	취 득 년 월 일	자 격 · 면 허 명			시 행 처				
	. . .								
	. . .								
	. . .								
병 역	복 무 기 간	군 별		계 급	병 과	미 필 또는 면 제 사 유			
	~								
신 장	cm	체 중	kg	취 미	특 기		종 교		
가 족 사 항	관 계	성 명	연 령	학 력	직 업	근 무 처	직 위		
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.									
년 월 일 성 명 : (서명)									

신 원 진 술 서(약식)

(앞쪽)

성명	한자	주민등록번호	【 사진 】 사진파일 가능 (3cm×4cm) · (3.5cm×4.5cm)			
등록기준지						
주소						
실거주지						
직장	직장명 :	연락처		직장전화 :		
	소재지 :			휴대폰 :		
		E-mail :				
학력	학교명	기간	전공학과	학위	소재지	
		. . ~ . .				
		. . ~ . .				
경력	기관·업체 및 정당·사회단체명	기간	직책(직급)	상별관계(일자)		
		. . ~ . .				
		. . ~ . .				
해외 거주 사실	거주국가	기간	거주목적	동반가족		
		. . ~ . .				
		. . ~ . .				
병역	군별	기간	병과	최종계급	미필사유	
		. . ~ . .				
배우자 부모 자녀	관계	성명	생년월일	관계	성명	생년월일
	배우자			子女		
	父			子女		
	母			子女		
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,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.						
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(서명 또는 날인)						

210mm×297mm [백상지(80/㎡) 또는 중질지(80/㎡)]

(뒤쪽)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	
국가정보원, 국방부 및 경찰청은 「보안업무규정」 제46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및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, 제23조(민감정보의 처리 제한), 제24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) 및 제24조의2(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)에 따라 신원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,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·이용합니다.	
■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내역	
항목	성명(한자 포함), 사진, 주민등록번호, 등록기준지, 주소, 실거주지, 직장(직장명, 소재지 포함), 연락처(직장전화, 휴대폰, E-mail 포함), 학력(학교명 등 포함), 경력(기관 또는 업체명 등 포함), 해외거주사실(거주목적, 동반가족 등 포함), 병역사항, 가족관계(배우자, 부모, 자녀 포함)
수집·이용 목적	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
보유·이용 기간	2년
※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 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「보안업무규정」 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(채용)·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을 알려 드립니다.	
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동의함 [<input type="checkbox"/>] 동의하지 않음 [<input type="checkbox"/>]	
■ 민감정보 처리 안내	
항목	정당·사회단체 경력
수집·이용 목적	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
보유·이용 기간	2년
※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민감정보 처리 동의를 거부할 권리 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「보안업무규정」 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(채용)·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을 알려 드립니다.	
☞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동의함 [<input type="checkbox"/>] 동의하지 않음 [<input type="checkbox"/>]	
■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	
항목	주민등록번호
수집·이용 목적	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
보유·이용 기간	2년
※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「보안업무규정」 제46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	
☞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[<input type="checkbox"/>]	
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,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.	
신청인(대리인):	(서명 또는 인) 20 년 월 일
(필요시) 법정대리인:	(서명 또는 인) 연락처:

210mm×297mm [백상지(80/㎡) 또는 중질지(80/㎡)]

개인정보 제공 동의서(약식)

■ 본인은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(범죄 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. 이하 동일)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, 이를 위해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.

■ 이에 따라,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.

■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.

유의사항 (개인정보 수집 목적·관리방법,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집된 개인정보자료·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, 「공공기록물관리법」에 따라 관리·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.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년 월 일

성명 (서명)

■ 본인 동의

성명	생년월일	서명	
		개인정보 제공 동의	민감정보 제공 동의
		자필 서명	자필 서명

※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자료 항목

개인정보	민감정보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민 조희자료(경찰청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범죄경력·수사·수배 조희자료(경찰청)

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

[별지 제3호 서식] <개정 2019. 12. 24.>

(앞쪽)

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① 구분	② 시험실시기관	③ 응시직명	④ 응시번호	⑤ 성명	사 진 (3.5cm × 4.5cm) ※ 압인 또는 계인
⑥ 검사시					
⑦ 재사용				⑧ 주민등록번호	

검사내용

키	cm	체중	kg
허리둘레	cm	혈압	
(교정)시력	좌: ()	색신 (색각)	(교정)청력
	우: ()		
종양질환		이비인후질환	
호흡기질환		심혈관질환	
소화기질환 (간질환 포함)		신장/비뇨기계질환	
내분비질환		혈액질환	
신경질환		피부질환	
근골격계질환		안질환	
정신질환		흉부X선검사	
기타			

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.

년 월 일

검사자(담당의사)

(서명 또는 인)

검사결과	[]합격	합격사유	
합격여부	[]판정보류		
판정보류사유 (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 등)	*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		

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검진기관의 장

(서명 또는 인)

유효기간	판정일부터 1년
------	----------

유의사항 및 작성방법

[응시자]

-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.
 - 가.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.
(예: 인사혁신처, 국세청 등)
 - 나.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.
(예: 9급 세무직, 7급 전기직 등)
 - 다.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.
-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.
 - ※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[검진기관]

-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(押印) 또는 계인(契印)을 해야 합니다.
- "검사 내용"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.
 - 가. 검사 결과 기재의 예: 질병명(심부전증, 백혈병, 척수종양 등)을 적거나 "정상", "양호", "이상 없음"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.
 - ※ 필수사항: 질병이 있는 경우 "합격" 또는 "불합격"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.
 - ※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
 - 나. 임신부나 홍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홍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홍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.
 - (작성 예시) 임신부인 경우 "임신으로 인해 홍부X선 검사 면제"라고 적습니다.
- "검사 결과 합격 여부"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[]안에 "√"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.
 - ※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.
 - 가. 합격 사유 기재의 예
 - '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'에 해당하지 않음
 -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
(예시: '만성골수성백혈병'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(官解)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)
 - 나.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
 -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(예시: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사지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)
 - ※ 응시자의 질환이 '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'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.
-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야 합니다.